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주형환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## 1. 의결주문

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발명진흥법」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6. 7. 7. ~ 8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#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「발명진흥법」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6조(우선심사의 대상)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<p><u>7의2.</u> (생략)</p> <p>8. ~ 13. (생략)</p>	<p>제6조(우선심사의 대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의2. 「발명진흥법」 제24조의 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</u></p> <p><u>7의3.</u> (현행 제7호의2와 같음)</p> <p>8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5766